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리공스 정보공개서

(주)리치빔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리치빔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23 (오금동 121-3)]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449-393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443-770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99-9283 (개설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리치빔	뿌리공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23 (오금동 121-3)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0.09.15.	2000.09.15.	김남중	02-449-3936	02-443-7707
	법인등록번호	110111-2069543	사업자등록번호	215-81-974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前 대표이사	남양우	뿌리공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23 (오금동 121-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남중	02-449-3936	02-443-7707
사내이사(대표자) /지배인	김남중	뿌리공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23 (오금동 121-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남중	02-449-3936	02-443-7707
감사	남기일	뿌리공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23 (오금동 121-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남중	02-449-3936	02-443-77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뿌리공스” 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뿌리공스	
상 호	뿌리공스 0000점	브랜드명 + 지역명(시군구 + 읍면동)
상표(서비스표)	뿌리공스	2025.10.20. 출원 신청 출원번호 : 40-2025-0193308
	-	-
광 고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69,284,375	5,686,445	63,597,930	78,801,033	13,427,248	11,697,665
2023	75,887,070	5,449,314	70,437,756	82,924,259	18,004,344	16,339,825
2024	56,393,799	6,013,567	50,380,232	95,982,166	21,182,656	18,042,47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피나치공 운영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남양우		2000.09. ~ 2025.08.	(주)리치빔 前 대표이사	업무 총괄
	김남중	지배인	2010.09. ~ 현재	(주)리치빔 지배인	업무 총괄
		사내이사 (대표자)	2022.03. ~ 현재(사내이사) 2025.08. ~ 현재(대표자)	(주)리치빔 사내이사(대표자)	
	남기일	감사	2023.05. ~ 현재	(주)리치빔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0	114

직원 수는 공장 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가 뿌리공스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리치빔	가맹사업 경영	2003.6~현재	피자,치킨 피나치공 (등록번호 : 20080100496)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뿌리공스 (상표권)	제품판매 등의 영업활동	2025.10.20. 출원신청	출원 제40-2025-0193308 -	(주)리치빔 (주)리치빔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뿌리공스 가맹사업 현황

1. 서양식(소분류: 피자,치킨) 관련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동종업종[피자,치킨]인 "피나치공"을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뿌리공스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리치빔	뿌리공스	김남중	가맹사업 개시 예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23 (오금동 121-3)

3. 뿌리공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뿌리공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양식	피자, 치킨, 치즈볼, 웨지감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뿌리공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점)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뿌리공스 가맹점 수

(단위: 점)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뿌리공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도 [1]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리치빔	피나치공	20080100496	피자	485/0	505/0	562/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본 건에 대하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뿌리공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당사 외 지역별 가맹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본 건에 대하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TV/인터넷	-	-	-	-	해당사항 없음
광고	소계	-	-	-	-	해당사항 없음
	TV	-	-	-	-	해당사항 없음
	라디오	-	-	-	-	해당사항 없음
	인터넷	-	-	-	-	해당사항 없음
판촉	지원	-	-	-	-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치가맹금 반환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리치빔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뿌리공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보증보험 증권발행	확정 금액
설비 / 집기류	가맹본부 지정업체 또는 자유투입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인테리어	가맹본부 지정업체 또는 자유투입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개점행사비	해당 없음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직접구입 / 직접공사	가맹본부 지정업체 / 직접공사	예치하지 않음	직접공사의 경우 감리비: 16.5㎡ 당 1,100천원(VAT포함)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950]				
가맹비	1,100	계약 체결 시	반환되지 않음	상표 사용료	양도양수 시 제외 가능
교육비	3,850	계약 체결 시	반환되지 않음	노하우 및 기술전수 교육비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치가맹금 반환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 액수 : 금 4,950,000원)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8,530 ~33,410]				
잡기 / 설비	(주)리치빔	약 12,600	약 2,520	입고 시	설치 전 계약취소	튀김기, 오븐기 주방기계 등
별도비용	(주)리치빔	약 4,580 ~ 약 5,930 (16.5㎡ ~ 26.4㎡ 서울,경기,인천 기준)	약 740 ~ 약 920	개별시공 시공 후	공사 전 계약취소	전기공사,외부닥트 공사,가스증설,전기 증설 등
인테리어 / 익스테리어 / 간판	(주)리치빔	약 9,030 ~ 약 12,560 (16.5㎡ ~ 26.4㎡ 서울,경기,인천 기준)	약 1,570 ~ 약 1,810	시공 후	공사 전 계약취소	
초도 물품대금	(주)리치빔	약 2,320	약 460	오픈 3일전	상품 미공급시	

별도비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하고 개별 시공 진행하므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16.5㎡ 기준으로 1,100천원(VAT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 3일 이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본인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으며,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에 대한 영업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선정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자사 창업적성 검사 시 가능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근로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뿌리공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하단 [물품 구입 및 입차]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7)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비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1~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분담기준 참고					[31~32]쪽
판촉분담금	분담기준 참고					[31~32]쪽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주)리치빔	개선비용의 60% ~ 100%	계약서의 지급일까지	공사 전 계약취소		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주)리치빔	연 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본 건에 대하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뉴얼 관리	당사 매뉴얼 준수여부 (위생준수, 서비스, 필수품목 사입여부 등)	수시	문의: SV팀 (02-449-3936)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뿌리공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9~30]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가)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9조에 따라**

월단위로 최소 금 3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또는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마)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뿌리공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장 상품의 경우 또한 동일한 사양의 품목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 가맹점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뿌리공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뿌리공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2024년 기준
계			-	-	-

2) 당사가 [뿌리공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2024년 기준
계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하단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p>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p> <p>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단, 1차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2회 위반 시에도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3회 위반: 계약 해지</p>	

주상품	세트	뿌리공 싱글 피치세트
		치즈 뿌리공 치킨 피치세트
		허니버터 뿌리공 치킨 피치세트
		핫 뿌리공 치킨 피치세트
		치즈 뿌리공 치킨 순살피치세트
		허니버터 뿌리공 치킨 순살피치세트
		핫 뿌리공 치킨 순살피치세트
		통새우 뿌리공 피자 피치세트
		生 바질 뿌리공 피자 피치세트
	피자단품	콤비 뿌리공 피자 L
		生 바질 뿌리공 피자 L
		통새우 뿌리공 피자 L
	치킨단품	치즈 뿌리공 치킨
		허니버터 뿌리공 치킨
		핫 뿌리공 치킨
		치즈 뿌리공 순살치킨
		허니버터 뿌리공 순살치킨
		핫 뿌리공 순살치킨
	사이드	뿌리공 치즈볼(치즈, 허니버터, 핫)
		뿌리공 웨지감자(치즈, 허니버터, 핫)
		코울슬로
		펩시콜라 245ml
		펩시콜라 500ml
		펩시콜라 1.25L
		코카콜라 500ml
		코카콜라 1.25L

		코카콜라제로 500ml
		코카콜라제로 1.25L
		치즈크러스트 추가
		뿌리공 디핑소스
		포장무
		피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본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하단참조	하단참조	물류프로그램 공지	2025.10월 기준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뿌리공 싱글 피치세트	17,900
치즈 뿌리공 치킨 피치세트	27,900
허니버터 뿌리공 치킨 피치세트	27,900
핫 뿌리공 치킨 피치세트	28,900
치즈 뿌리공 치킨 순살피치세트	30,900
허니버터 뿌리공 치킨 순살피치세트	30,900
핫 뿌리공 치킨 순살피치세트	31,900
통새우 뿌리공 피자 피치세트	34,900
生 바질 뿌리공 피자 피치세트	30,900
콤비 뿌리공 피자 L	18,900
生 바질 뿌리공 피자 L	20,900
통새우 뿌리공 피자 L	24,900

치즈 뿌리공 치킨	20,000
허니버터 뿌리공 치킨	20,000
핫 뿌리공 치킨	21,000
치즈 뿌리공 순살치킨	22,000
허니버터 뿌리공 순살치킨	22,000
핫 뿌리공 순살치킨	23,000
뿌리공 치즈볼(치즈, 허니버터, 핫) 4ea	5,000
뿌리공 웨지감자(치즈, 허니버터, 핫)	4,000
코울슬로	1,900
펩시콜라 245ml	800
펩시콜라 500ml	1,300
펩시콜라 1.25L	2,000
코카콜라 500ml	1,600
코카콜라 1.25L	2,300
코카콜라제로 500ml	1,600
코카콜라제로 1.25L	2,300
치즈크러스트 추가	3,000
뿌리공 디핑소스(1개, 2개)	700, 1300
포장무	500
피클	5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동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 치킨, 치즈볼, 웨지감자	피나치공, 뿌리공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장, 호텔, 지하철역사내, 기업체, 학교, 군부대, 관공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에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행위 포함)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뿌리공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피나치공)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본 건에 대하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뿌리공스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 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을 통하여 가맹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가맹계약기간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③	D-180 ~ D-90

㉔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㉔, 아니오→㉕	D-180 ~ D-90
㉕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㉕, 아니오→A	D-180 ~ D-90
㉖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㉕+15일 이내
㉗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㉘	
㉘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㉙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㉚	D-180 ~ D-90
㉚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의 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의 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의 3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위생,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의 4
○ 뿌리공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1항의 5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3조 1항의 6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실 때까지 원·부재료 등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6조1항의 1
○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26조1항의 2
○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26조1항의 3
○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점포설비의 교체,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26조1항의 4
○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6조1항의 5
○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칭 및 상표, 서비스표, 휘장, 로고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1항의 6
○ 가맹본부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26조1항의 7
○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영업품목 및 메뉴와 가격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	26조1항의 8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오토바이 2대이상)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1항의 9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6조1항의 10
○ 가맹본부가 제공한 각종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체크리스트 또는 사입점검표 70% 미만, 조리매뉴얼, 포장매뉴얼, 위생매뉴얼, CS매뉴얼 포함)	26조1항의 11
○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하거나 교육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6조1항의 12
○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모자, 앞치마, 티셔츠 등 미착용)	26조1항의 13
○ 가맹점 사업장 내에서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경우	26조1항의 14
○ 개업초기 1개월간은 전단지 규격이 16절일 경우 8연 이상을 배포하지 않거나, 이후 한달에 1연 이상씩의 전단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6조1항의 15
○ 가맹본부에게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판촉활동을 하거나 팜플렛,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을 임의로 제작하여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26조1항의 16
○ 가맹본부에게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시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26조1항의 17
○ 원재료 등 모든 물품대금에 대하여 납품당일 오전 6시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 도착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6조2항의 10
○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것과 다른 원재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26조2항의 11
○ 고객의 쿠폰사용 요구(본사발행 시식권, 해피머니상품권)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미지 훼손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26조2항의 12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물품 등을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양도 또는 판매할 경우	26조2항의 13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과 제품조리(조리매뉴얼 기준), 처리(CS매뉴얼 기준)의 미숙 등 동일한 건으로 소비자에게 3개월에 걸쳐 2회 이상의 항의가 있는 경우. (본사 게시판, 문자게시판, 유선접수 등)	26조2항의 14
○ 가맹본부의 영업 일시 정지 및 재교육에 불응한 경우.	26조2항의 15
○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경우	26조2항의 16
○가맹본부의 담당관리자(슈퍼바이저)의 점포 출입 및 영업상태에 대해 원활하게 점검을 할 수 없도록 거부하거나 점검표 서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6조2항의 17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	26조2항의 4, 34조3항의 4, 34조3항의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부재료 등의 공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 3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4조 3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 3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4조 3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3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3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 3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 3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3항 9호
○ 가맹점사업자의 잘못된 고객응대(서비스) 및 매뉴얼 위반 등으로 과급력이 높은 미디어 (SNS, 인터넷뉴스, 외부매체)등을 통해 노출되어 가맹본부의 명성에 1회 이상의 위해를 끼친 경우	34조 3항 10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변경 될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도인이 가맹계약의 양도를 요청할 것 ·양수인이 '당사에게 양도인과 관계되는 일체의 청구권이나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계약 → 양수인과 당사간 가맹계약 체결 → 교육입소(5일) → 오픈 영업진행	문의: SV팀 (02-449-393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

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시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뿌리공스와 동일한 업종(피자,치킨)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피자와 치킨류를 세트로 제공 또는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SV팀 (02-449-393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뿌리공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 수	비고
PM 12:00 ~ AM 12:00	1주당 6일 이상	문의: SV팀 (02-449-39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없음	직접 근무	매뉴얼 교육 이수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종업원의 그 고용과 해고는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사업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고용노동부 급여적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경영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운영 매뉴얼 및 영업지도 등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업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조리 매뉴얼	담당자 매장 방문 → 조리 매뉴얼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개선사항 조치	수시/정기적	본사 SV팀	
서비스 매뉴얼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매뉴얼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개선사항 조치	수시/정기적	본사 SV팀	
매장 운영에 대한 경영지도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운영사항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개선사항 조치	수시/정기적	본사 SV팀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리치빔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뿌리공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행사별로 부담비율 안내 (혹은 가맹본부 전액부담)		<p><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p> <p><관측> 관측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관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신규메뉴 출시 행사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별) 전단광고	없음	전액 부담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월별 관측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사의 관리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 및 브랜드의 통일성 관리 차원으로 필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유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영업 관련 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월 단위로 최소 금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물품공급 중단조치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이 해소(완료)되기 전까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 제8조1항의 권리를 일시정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을 사용할 때에 가맹점사업자는 매일 금 일십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수해, 지진, 화재 등이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의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가맹점 개설을 위한 소요기간 및 비용	40일 내외	[약 33,480 ~ 약 38,36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정보공개서 제공 - 희망지역 확인 / 점포예정지 인근 10곳 가맹점명, 주소 연락처 확인	D-40	
방문 / 내방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납부 / 보증보험증권 교부	- 개설 승인 - 가맹금 납부 -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행	D-26	4,950
인테리어	- 외관일체형 간판 등 인테리어 공사실시 - 별도비용	D-21	약 13,610~ 약 18,490
교육 실시	- 점포운영 관련 교육 실시	D-15	
설비 / 집기 입고	- 잔여집기 개별 구입 포함 입고	D-7	약 12,600
오픈	- 가맹점 개설, 물품 입고 및 영업개시	D-day	약 2,320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담 및 협의과정을 통해 파악된 예비창업자의 주변 상황(혼자 운영, 동업, 투자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등)과 적성을 감안하여 신규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 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있는 서류 첨부) → 분할지급시기 및 분할지급 비율에 대하여 가맹본부 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 후 1년 내 지급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지원	가맹점 오픈시 지원인원 파견	가맹본부의 신규교육 이수	오픈일로부터 1일간	-	-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개점지원 프로모션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신중히 살펴본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하며, 해당 프로모션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개점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담보제공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개점비용 일부(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간판 집기, 설비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무이자로 분할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금액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지급 기간 중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날까지 남은 개점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총 분할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설비 담보물의 소유권은 가맹본부에게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분할금액 지급이 진행중 이거나 완료 되기 전까지는 가맹본부의 강제집행권 행사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약정된 분할금액 지급을 완료하는 즉시 설비 담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나, 일부 지급한 분할금액을 사유로 설비 담보물의 부분소유권을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기존의 가맹점사업자 (본건 계약체결 현재 뿌리공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이하 ' 기존 가맹점주 ' 라 함) 또는 기존 가맹점주가 소개한 친인척 가맹점사업자가 신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함으로써 개점지

원 프로모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가맹점주 또는 소개받은 친인척 가맹점 사업자는 신규 점포에 대한 담보제공 방법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개설비용 전부 (매장 임대차보증금,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간판, 집기 설비 등) 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이자로 분할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위 가맹점사업자가 분할 금액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기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서 작성 후 1년 이내에 기존 매장과 신규 매장 중 어느 하나 (단, 기존 매장의 수가 2개 이상인 가맹점주의 경우 기존 매장 전체를 의미함) 라도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날까지 잔여 개점비용 전액을 가맹본부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프로모션 제외 사항 : 에어컨, 오토바이, 보험 외 매장에 필요한 사무용품은 프로모션에서 제외

③ 위 제 2항의 경우, 기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 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점포를 오픈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오픈 일 기준 이후 7 영업일 이내에 금 1천만원을, 신규 점포 오픈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추가 금 1천만원을 각각 프로모션 지원금으로써 지급하기로 합니다.(제세공과금 3.3% 공제 후 지급) 다만, 기존 가맹점주가 신규 점포 가맹계약서 작성 후 1년 이내에 기존 매장과 신규 매장 중 어느 하나 (단, 기존 매장의 수가 2개 이상인 가맹점주의 경우 기존 매장 전체를 의미함) 라도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은 모두 취소되고 기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위 프로모션 지원금 전액을 즉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기준

- 기존 가맹점주 신규 개설시 : 기존 가맹점주에게 신규 가맹점 오픈 일 기준 이후 7영업일 이내 1천만원 지급/신규 가맹점 오픈 일 기준 만1년이 되는 시점 이후 7영업일 이내 1천만원 지급
- 기존 가맹점주의 친인척 가맹사업자 개설시 : 기존 가맹점주에게 친인척 가맹사업자 가맹점 오픈 일 기준이후 7영업일 이내 1천만원 지급 / 친인척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오픈 일 기준 만 1년 이 되는 시점 이후 7영업일 이내 1천만원 지급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초기 오픈금액 지원	가맹점 오픈 시 필요한 자금 무이자 지원	가맹점 신규 개설 및 양도양수(할부승계) 개설시	가맹계약일 로부터 4년간	별도 협의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뿌리공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음식 조리, 점포 경영 홍보, 서비스 등	이론/실습교육 (본사 교육장 입소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매뉴얼 고객서비스 매뉴얼 등	현장방문 또는 (본사 교육장 입소 또는 온라인 교육)	상황에 따라 또는 정기적	필수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 교육	현장방문 또는 (본사 교육장 입소 또는 온라인 교육)	상황에 따라 또는 정기적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뿌리공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40시간	3,85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미정	필요 시 이수
서비스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미정	필요 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의 경우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개설팀(1599-928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체크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Supervisor Check List				
매장명	방문일자	점주			(인)	
		담당자			(인)	
Item	Check List			Y	N	Comments
Quality	매뉴얼에 맞는 야채 사용 여부 - 세송이, 냉동야채(피망)사용, 피망 미사용 등					
	피자조건설소스 매뉴얼 기반으로 사용 여부 - 핫앤스워드, 갈릭소스, 요거트 드레싱 등					
	피자 도우 생지 상태 - 발효상태, 보관상태, 외용투와 생지가 같은 제품인지					
	피자 토핑 품질 점검 - 밀봉상태, 해동 여부, 외형확인(수분, 변색 등) 등					
	매뉴얼에 맞는 치킨 조리 - 부리공 시즈닝 봉투 사용 등					
	치킨 파우더 및 시즈닝, 소스 품질 점검 - 파우더, 시즈닝 밀봉상태, 소스 상태 점검					
	매뉴얼에 맞는 기름 관리 - 사입점검표 사용 비율, 매일 정제, 기름 산화 정도					
	매뉴 완성도 확인 - 배인, 쿠팡이츠, 요기요, 탱겨요 리뉴 사진 확인					
Service	개인위생 준수 여부 - 유니폼, 앞치마, 모자, 손톱, 두발, 수염 등 개인 위생 청결유지					
	전단 홍보 진행 여부 - 월 배포 수량, 전단 홍보 주기, 홍보 방향성, 잔여 전단 수량 확인					
	포장시 구성품 지급 여부 - 피클, 핫소스, 소금, 보존액 등					
	미판매 메뉴 확인 - 미발주 품목, 미지정 메뉴, 배달앱 등록상태 확인					
	매장 부착물 관리 상태 - 원산지 표시판, 포스터, 메뉴판 부착 및 노후화 확인					
	임의 판매 메뉴, 판매 가격 인상 확인 - 양념, 반반 변경 등					
Cleanliness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끼치는 요소가 있는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 코울슬로, 냉장제품(디핑, 소스류), 가루시즈닝 등					
	제조 일자 표시 및 관리 준수 여부 - 소분사용 시 밀봉 및 소비기한 표기 등					
	냉장고 개인음식 보관시 '직원식사' 별도보관 및 표시 부착 여부 - 보관법 관련					
	냉장고에 '해동중' 표시 부착 여부 - 보관법 관련					
	제품 조리시 교차 오염 방지 여부 - 소스 혼합, 조리 시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 등					
	제품 별 올바른 보관상태 확인 - 냉장/냉동 제품, 실온보관, 개봉 후 냉장보관 등					
	튀김기 청소상태 - 튀김기 내/외부, 바닥, 닥트 안쪽, 정제기 내/외부					
	오븐기 청소상태 - 선반, 레일, 닥트 안쪽					
	생지작업대 및 토핑테이블 청소 상태 - 밀가루, 토핑냉장고 청결 상태					
	냉장/생동고 관리 상태 여부 - 내 외부, 손잡이, 성에 제거, 내부 온도 설정 등					
	파우더 바가지 관리 상태 여부 - 보관위치, 미세척 재사용, 교차 사용 확인					
	조리도구 관리 상태 여부 - 청결 상태 확인(반달칼, 주걱, 집게, 계량컵, 국자 등)					
	매장 내/외부 청결 여부 - 간판, 시트지, 유리창, 매장 입구, 카운터 앞, 고객 대기공간 등					
Etc	화재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점주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건증/위생교육 이수여부 (연1회)					
	점주와 직원(파트타임어 포함)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매장점검 특이사항/개선사항 ▣						